

##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강득구 의원, 정혜경 의원 (가나다순)

### 1.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 지자체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한국 정부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55호, 187호 협약 위반으로, 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는 2023년 개정 시한을 넘겨 방치하고 있음
- 이에 동일한 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사는 적용되나 특수실무사, 과학실무사는 안되고, 동일한 지자체에서 청소노동자는 적용되나 수도검침, 농업기계 수리는 적용되지 않음. 심지어 간호사 노동자가 민간병원에서 일하면 적용되고, 지자체 보건소나 방문간호사는 적용되지 않음. 콜센터 노동자도 민간 사업장은 적용되나, 공공부문은 적용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이나 보호구 지급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음. 그러나, 노동부가 공공행정, 학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근골격계 예방점검 실시 실적은 전무하고,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실무사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급증하고 있음. 이에 22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적용 확대 및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실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
- 현장 노동자 발언
  - 특수교육 실무사 : 이미정 서비스 연맹 학교비정규직 노조 특수교육 실무사 분과장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 수도검침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 특수교육 실무사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 이현주 사무국장
  - 방문간호사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구자연 안산지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필요성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필요성
- [붙임2] 발언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붙임3] 발언문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붙임4] 발언문 : 특수교육 실무사
- [붙임5] 발언문 : 수도 검침 노동자
- [붙임6] 발언문 : 특수교육 실무사
- [붙임7] 발언문 : 방문간호사
- [붙임8] 발언문 : 민주노총

##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필요성

### 1.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란?

- 산업안전보건법 3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었지만,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령 별표1로 규정. 일부 적용 제외로 명시된 대상이 광범위함.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항공, 선박을 비롯해서, 사무 서비스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는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 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없이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이 <현업고시> 임
- 그러나, 현업고시 대상 직종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제기가 많았고, 당시 노동부는 2023년 7월까지 개정 확대 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몰 고시함. 이에 민주노총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업고시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직종별 실태조사, 현장 증언, 면담, 집회 등을 진행했으나, 노동부는 개정 고시 시한인 2023년 7월을 넘기고도 개정하지 않고 있음
- 국제 노동기구인 ILO는 협약 155호, 187호를 기본 협약으로 격상시켰고, 한국은 이미 비준한 협약임. 협약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치를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학교, 지자체 공공행정의 적용 제외는 ILO 협약을 위반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 업무]

공공행정 현업업무	초,중,고,대학 등 현업업무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2. 민주노총의 요구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시행령 별표 1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에 유해 위험도가 높은 직종 우선 적용

가. 교육서비스업 :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수상 안전요원 나. 공공행정 : 수도검침, 방문 간호사,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단속업무 (주차단속, 하천 단속), 보건소 업무, 도서관 사서, 콜 센터 상담사, 체육시설 강사, 방문 상담, 사무 행정
---

## [붙임2] 발언문 : 국회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단서 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의 노동자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로 되는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실무사, 과학실무사, 수도검침 노동자, 농업기계 수리 노동자, 지자체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방문간호사, 공공부문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외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직종을 살펴보면 더 황당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입니다.
- 이 현업고시 때문에 이들은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도 못받고,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조치에서도 예외로 됩니다. 보호구 지급도 안되고, 근골격계 예방점검도 안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지위도 서러운데, 안전과 보호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업고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업고시확대는 안되고 있고,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을 차별을 바로잡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일부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정비하겠다는 정부가 올해에는 ilo협약 위반이 아니다. 확대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 보호라는 것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안전하게 일할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붙임3] 발언문 :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

해마다 늘어가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이 발생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산재보다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취지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지만 공공부문 등 일부 직종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 고시에서 제외된 직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 고시 시행 후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종사자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는 해당 고시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다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는 사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그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 [붙임4] 발언문 : 특수교육 실무사

##### 이미정 서비스 연맹 학교비정규직 노조 특수교육 실무사 분과장

안녕하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특수교육실무사 분과장 이미정입니다. 저는 서울 신원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차 특수교육실무사로서 근무 첫해에 발목 골절로 김스를 했습니다. 딱 하루 쉬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가도 없었습니다. 채용 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는다면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등교 이후 수업 시간 지원, 쉬는 시간 지원, 점심시간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하교 지원, 교실 정리 정돈 및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쉴 틈 없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이렇게 쉴 틈 없는 노동을 하면서 물리거나 맞거나 꼬집히고, 부딪히고, 베이거나 찢리고, 깔리는 등 업무 중 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급 아동을 뒤에서 안고 진정시키던 중 아동이 고개를 뒤로 세게 젖혀 뒤통수에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대체인력이 없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주일 만에 출근했습니다. 또 한 특수교육실무사는 학생을 교실 바닥에서 앉고 일어서다 왼쪽 다리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영상 촬영하니 힘줄파열과 근육 손상이 있어 수술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 특수교육실무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휴식 없이 근무를 강행하게 되었고 이동 참여 수업 시 계단이용과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아동을 업고 이동하면서 통증은 만성 통증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이동을 돕거나 휠체어를 이동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겪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노동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업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학생의 손을 붙잡거나 팔짱을 끼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후엔 긴장으로 인한 근육통과 손목, 어깨통증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꼬집히고 물리고 할멈을 당해 병원에 가도 사고 부위와 경로를 설명하기 애매하고 진단도 타박상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나 봉합 상처가 있어야 겨우 산재 인정하고 이마저도 비급여 발생 시는 본인 부담이 큼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머리로 가슴을 맞아 너무 아파 엑스레이 찍으니 타박상이라고 진단이 나와 약 먹고 일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누워서 발로 차면 얼굴, 배, 가슴, 등을 맞기도 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기 등은 물론 발길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지도사는 각종 산업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 직종입니다. 그 누구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범상의 조치들을 받아야 할 직종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 조합원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재해예방 및 산재신청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5.4%(761명)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병 유병률이 높음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직종이 아니어서 예방 및 처리절차와 관련한 교육이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교육 당국과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학교에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5] 발언문 : 수도 검침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경기지역지부 정 지매 부 지부장

-

### <수도검침원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상하수도 검침원은 업무 중 상해로 인하여 개 물림 및 모기 쥐 벌레 등 감염 매개체 감염병 발병 위험 및 낙상 등 상시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저는 손가락 신경 파열로 주먹을 꼭 움켜 지지 못한 채 다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sup>참고1</sup>

검침원은 저뿐만 아니라 전국 검침원은 업무상 다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지서 송달 중 묶인 개에 물려 업무상 재해 신청하였으나, 신청 과정에 저도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주인에게 전화하여 보험 신청해달라 문자를 계속하여 확인하였으며 개 주인과 구상권 청구 관련으로 계속 연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들 개 물림으로는 이래서 신청을 못 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국회에 와서 위와 같이 수도검침원 위험에 대하여 알렸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였는데 그때 당시 수도검침원 산재 건에 대하여 조사 해 보셨는지, 수도검침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위험함을 호소하는 학교에 있는 노동자까지 고용노동부 측에서 위험성 강도 평가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자체 4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의 295명의 지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과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 측 위원이 갑작스레 참석을 못하게 되어 공무원 대표노동조합 지회장인 제가 지명을 하여 위원추천을 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안 된다 통보 합니다. 이유인즉슨 기간제와 공공근로포함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것이지 공무원 대표만으로는 안 된다 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는 하였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이 통보받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의 공공행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6.28.)
- 「현업종사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별표1에 의하면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저는 검침원 업무 하는 노동자 지회장으로 조합원으로 있는 현업종사자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니다. 현업종사자 분류 시 왜 어떤 사유 또는 연구용역에 지정하였는지 자료 받아 보고 싶습니다. 혹 시나 몇 명이 모여 현업종사자를 단기간 안에 분류 지정한 것이라면 노동자 안전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업무태만입니다.

또한 현업종사자가 아닌 노동자대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고용노동부에서 노조를 어용 노조로 만들게 하는 것과 사용자 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 위원을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내세워 사용자 측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주려는 취지입니다. 현업종사자에 대하여 수도검침원뿐 아니라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십시오.

#### 참고1. 수도검침원 공무원 근로자 2024년 1월~7월 업무상 재해 사진



계량기 지침 확인하다 철판 덮게 허벅지로 떨어짐	개 물린 후 봉합(산재 신청)	고지서 송달 중 쌓인 눈으로 인하여 넘어져 새끼손가락 인대 늘어남
계량기 지침 확인하다 철판 덮게 팔에 떨어짐	계량기 뚜껑에 손 긁힘	계량기 뚜껑에 손 찢어져 신경과열로 도수 치료, 물리치료 받았으나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접히지 않고 손 성형도 불가하다 함.(산재 신청)

**[붙임6] 발언문 : 특수교육 실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이현주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조합원 이현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경기도에서 12년째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즉 특수교육지원인력이 공교육에 도입된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8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기에 근속이 오래된 특수교육지도사는 15~16년 정도 이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현업업무종사자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특수교육지원 인력의 업무 특성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등교지도를 시작으로 하루의 업무는 시작 됩니다

교실과 운동장, 외부 활동 수업 시간에 특수교육학생들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권을 위해 수업지원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대소변 등 화장실 지원, 교실이동지원 등 학생 하교 후에는 학습자료 제작 및 교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그림자입니다.

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지원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이동지원이나 외부활동 이동 할 때 학생의 휠체어를 밀고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특수교육지도사는 팔과 허리, 다리에 힘을 주고 세계 밀어야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학생이 미끄러지지 않게 뒤로 돌아서 휠체어 이동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허리와 손목, 팔 어깨, 다리 어느 한 곳 멀쩡한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휠체어 탄 학생이 외부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날이면 학생을 업거나 안아 들어 올려 버스에 태우고 무게가 상당한 휠체어를 접어 버스 화물칸에 싣고 내려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출 시 대기시간을 알 수가 없는 호출과 동시에 순번 배정이 되어 외부 체험학습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 또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온전한 육체노동과 정신력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비포장길이나 경사도가 심한 길 또한 특수교육지도사가 감내하고 학생들을 이동지원 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실 이동 시 급식실이나 체육관 예체능 교실 이동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은 한정되어 있기에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 비라도 내리면 학생과 특수교육지도사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독 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학생의 안전을 위해 양팔에 손을 넣어 학생의 몸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지탱이 될 수 있도록 보행지도를 하고 있으며 혼자서 일어서지 못하는 학생의 대소변지원이나 신변처리를 할 때면 학생의 몸을 들어서 변기에 앉히거나 안전한 바닥 또는 침대에 눕혀서 신변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해야 할 때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한쪽 팔이나 어깨, 몸 한쪽을 학생에게 온전히 내줘야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체중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부 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학교에서 대소변 처리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경우 별도의 신변처리실을 마련하고, 그 곳에 리프트가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특수학교에서 이제 막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손목, 허리, 어깨 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 통증이 10년 이상 누적되다 보니 일과 후와 특히 방학 기간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다음 학기 지원을 위해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상과 의자가 유아용이라 성인용 신체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를 근무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특성상 바닥에서 놀이 및 수업을 진행하기에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길 수없이 반복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 대부분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안아들어 올리는 과정도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 허리,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교육 현장의 상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00명의 특지사 중 80.3%가 근무 중 학생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때리거나 꼬집고 할퀴어서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장기적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어깨, 손목, 허리등의 특정부위 근육이 파손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으로 물거나 물건을 던져서 또는 물체를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학생이 휘두른 줄넘기 줄에 얼굴을 맞아 부어오른 적도 있었으며 꼬집고 할퀴는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어 뜨거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의자나 책상다리에 발가락을 찌르는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동지원 시 학생을 보호하려다 넘어져 갈비뼈와 치아 골절을 당한 동료도 있는가 하면, 외부 체험학습에 잔디 썰매를 혼자 탈 수 없는 학생을 안고 썰매를 타다가 학생이 머리를 갑자기 뒤로 젖히는 바람에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을 잡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 등 상해 사고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측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40.4%가 학교 측 대응이 일절 없었다고 답했으며 산재로 처리했다는 답변은 겨우 0.9%였습니다. 저도 사고가 난 후 특수교사에게 보고

했으나 이런 일 하다 보면 늘 있는 일 이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관리자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 중 교사와 긴급히 연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근무 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경부터 휴대전화, 입고 있는 옷등이 망가진 경험은 60% 이상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파손 처리 보상은 89%가 자비로 처리하였다는 답변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참고로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공무직 중 최저임금 겨우 넘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이기에 근무 중 발생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자비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많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로 인한 질병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 매뉴얼 조차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평등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안전 문제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학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공무직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일념과 보람으로 버티고 있지만 버티는 것은 산업재해를 해결 하는게 아닙니다.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하루빨리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 한 명이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종사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교육지도사가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지원받는 학생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대폭 충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장애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투쟁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7] 발언문 : 방문간호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안산지부장 구자연

방문 간호사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며, 대상자와 ‘대면’ 과 ‘비대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과 다양한 연령층의 수급자 그리고 지역에서 요청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방문간호사는 전국에 2천여명으로 방문 간호사의 주요 업무 직접 방문, 내소 방문, 전화상담이며 그중 하루 평균 직접 가정방문 횟수는 5~7가구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이 세계 1위 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분들을 방문 하다보면 정부를 향한 온갖 불만스런 비난, 욕설 등을 엄청 듣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정신질환 수급자들도 걸러지지 않고 방문 하다보면 돌출 행동으로 인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 애완 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개물림 사고, 남성독거노인들의 성희롱, 추행 등 신체적 위협에 늘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점 없이 십 수년을 일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각 개별 기관에서 현재 행동 지침이나 매뉴얼 등 대응 방침 자체가 없는 곳이 20%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 방침이나 매뉴얼이 존재하기도 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방문간호사들 대부분이 혼자 방문을 하다 보니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는 방문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 관리사등 방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민원 응대 및 감정노동 관련 산업안전 관련 대책은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 사무로 업무가 분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은 감정 스트레스와 현장 방문 업무로 인해 고질적인 허리와 어깨 질환과 피부질환 비염 알레르기 질환 등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만성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지만 질병이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 사무로 분류되어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직업군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안법 현업고시가 확대되어 직업으로 인한 사고 및 질환에 대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발생 시 제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받기를 촉구합니다.

## [붙임8] 발언문 :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노동부는 현업고시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기본적 보호를 받으며, 단지 위원회 구성과 안전 보건계획 수립 영역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노동부가 우리 사회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너무 높게 보거나 모르는 것이며 여전히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기간 꾸준히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해왔고 수많은 현장 증언과 현장 조사로 그 필요성을 증명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현업고시 적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미적용 직종은 덜 위험한 직종으로, 아니 위험하지 않는 일을 하는 직종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하루 하루는 매우 불안하고 고달픉니다.

꼭 사람이 죽어 나가야 위험한 일로 인식되고 서서히 골병들고 질병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일은 우리 사회도, 노동부도 무심한 것인지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현업고시 문제에 있어 학교 안에서 똑같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학생 통학 보조업무를 하는 통학 차량 실무사는 현업고시 적용을 받고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사는 왜 아직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안전문제 만큼은 정당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앞서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적용 확대 및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